

개인채무자 보호와 개인금융채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모 두 발 언

2024. 4.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권 협회 등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정부안이 2022.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2024.1월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법 시행(24.10월)을 6개월 앞두고
그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II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취지

우리 경제는 90년대말부터
가계신용이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2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하고,
대부업법이 제정되는 한편,
2004년에 법원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되고,
2009년에 채권추심법이,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금융권이 자체적인 상시 채무자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배경하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 ②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 ③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동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는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채무조정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Consumer Credit Act 1974」: 채권금융기관의 주기적인 여신 사후점검 의무화,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채권자가 먼저 채무조정을 제안하도록 의무화

다음으로, 금융회사에서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의 성패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데 달려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권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도 만들고 있으며
자체 TF를 운영하고 있는 업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체를 비롯하여
모든 회원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제도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도 상당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0.17일 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법률을 적용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례가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권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법 시행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 - 금감원 - 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점검반을 통해
법령의 구체적 적용, 내부기준 마련·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착을 위한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연체 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채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대출 쏠 단계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가 완성*되고,
한국형 공-사(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 금융소비자보호법 / 대출연체 : 개인채무자보호법

** [사적]채무자보호법('24년) - [준공적]신용회복위원회('02년) - [공적]법원 개인회생('04년)

이러한 보호체계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보호노력으로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자도 상생할 수 있다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취지를 항상 유념해주시고
법이 안착되기까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도 연체 채무자의 보호 규율의 안착을 위해
금융권과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